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4173호) 공포 알림

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제34173호)이 2024. 1. 30.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·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-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
- 기타 조문정비 등

2. 개정·공포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2024. 1. 30.자 관보, 우리 처 대표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4173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[illegible]회장,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[illegible]과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수의사회장, 한국동물약품협회장

주무관 황재앙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전결 2024. 1. 31. 김영주

협조자

시행 마약정책과-1795 (2024. 1. 3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/ 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805 팩스번호 0502-604-7992 / whgdkgo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